

2018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강릉원주대학교**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1	전형일정 .....	1
2	모집대상 .....	1
3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2
4	지원자격 및 기준 .....	3
5	지원절차 및 방법 .....	7
6	전형방법 .....	7
7	제출서류 .....	8
8	전형료 .....	10
9	유의사항 .....	10
10	안내부서 및 전화번호 .....	10

## [대학 소정양식]

<input type="checkbox"/>	입학원서 .....	11
--------------------------	------------	----

## 1 전형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원서접수	2017. 7. 3.(월) ~ 7. 7.(금), 18:00까지	방문접수만 실시함 ※ 접수장소 : 강릉원주대학교 입학관리과 (대학본부 109호)
자격심사	2017. 7. 19.(수)까지	입학관리과
합격자발표	2017. 7. 21.(금), 17:00 이후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a href="http://www.gwnu.ac.kr">http://www.gwnu.ac.kr</a> ) ※ 개별 통보하지 않음
합격자등록	2017. 12. 18.(월) ~ 12. 21.(목), 18:00까지	본교 홈페이지 합격자 등록 시스템
합격자 등록금납부	2018. 1. 31.(수) ~ 2. 2.(금), 금융기관 마감시간까지	본교 홈페이지에서 납입금 고지서 출력 후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

## 2 모집대상

입학정원 2% 이내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②항제2호 규정 -재외국민 및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포자녀</li> <li>②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li> <li>③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li> <li>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li> <li>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li> <li>⑥ 기타 재외국민</li> <li>⑦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li> </ul>
입학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②항제6호, 제7호 규정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제6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북한이탈주민</li> <li>②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li> <li>③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li> <li>④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li> </ul>

3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캠퍼스	단과대학	모 집 단 위	입학정원 2%이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입학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강릉 캠 퍼스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5	인원제한 없음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본학과		
		철학과		
		사학과		
	사회과학 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관광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법학과		
		자치행정학과		
		수학과		
	자연과학 대학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화학신소재학과		
	생명과학 대학	식품영양학과		
		식품가공유통학과		
		해양식품공학과		
		해양자원육성학과		
		해양생물공학과		
		해양분자생명과학과		
		식물생명과학과		
		환경조경학과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세라믹신소재공학과		
		신소재금속공학과		
		토목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예술체육 대학	미술학과			
	공예조형디자인학과	도자디자인 섬유디자인		
	체육학과			
	음악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곡		
	패션디자인학과			
	보건복지 대학	사회복지학과		
		다문화학과		
	과학기술 대학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b>합 계</b>		<b>5</b>	<b>인원제한 없음</b>	

## 4 지원자격 및 기준

### 가.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대상자

#### (1) 재외국민

##### 【기본 학력요건】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일반적 자격기준】

구 분	지 원 자 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	2년	2년	2년	2년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기타 재외국민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부모의 해외거주 사유(예):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해외 선교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 등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 ☞ 재학기간의 인정 기준

수업 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 과정(1년)을 포함하여 계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 단,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간주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적용  
(예: 중고과정 연속 3년 이상 →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 학생의 지원 자격이 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함

## ☞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 해외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 발령일까지의 기간

## ☞ 해외파견 근무자의 범위

### ① 공무원의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②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설치 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③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 해외 근무자의 근무 형식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  
(교육·연수출장, 유학 또는 해외취업 형식의 단기근무자는 제외)

## (2) 외국인

### 【기본 학력요건】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 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 소재 고교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하여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

### 【일반적 자격기준】

구 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외국인	(한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외국인(복수국적자 제외)	2년	2년	2년						

#### ☞ 재학기간의 기준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이수한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2년 전체)을 의미함
- 외국 국적 취득 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 보호자 등의 조건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인 학생 본인이 특별전형 자격대상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해외에서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 나. 입학정원 제한 없는 모집 대상자

### (1)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일반적 자격기준】

구 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전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12년	12년	12년	-	-	-	-	-	

#### ☞ 지원자격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본교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과정 4급 이상을 수료한 자

## ☞ 전교육과정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하여야 하며,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이 되지 않음(단, 불가피한 국가 사정으로 모국 수학한 경우는 본교에서 확인)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입·편입·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

## ☞ 보호자 등의 조건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 (2) 북한이탈주민

### 【일반적 자격기준】

구 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비 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통일부 확인	-	-	-	-	-	

##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98조)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 교육감은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학력 인정
- 또한, 각 시도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98조 1항 3호)
- 관련법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졸업한 초·중등 학교 소재국에 상관없이 지원 자격이 부여됨

## 5 지원절차 및 방법

### 가. 지원절차

입학원서 접수(지원자) → 입학전형(대학) → 합격자 발표(대학) → 등록(지원자)

### 나. 지원방법

- 1) 지원자는 제1지망만 할 수 있음
- 2) 복수지원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였을 경우 1개 대학만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이중 등록을 하였을 경우 그 합격을 모두 무효로 하고 입학을 취소함

## 6 전형방법

-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적격 여부를 판정
-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류심사 적격자 중 외국의 재학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선발

모집구분	모집단위별	전형요소 활용(%)			
		필답	면접 (구술)	서류 전형	최종학교 성적
입학정원 2%이내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모집단위 (치과대학,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			100%	
입학정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모집단위 (치과대학,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제외)			100%	

※등록금 환불 : 본교에 등록한 자가 타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포기를 원할 때에는 타 대학 합격통지서를 제시하고 본교에 등록포기 각서를 제출하면 등록금을 환불함

## 7 제출서류

- 한국어,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일부서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가 원본이 필요하면 원서접수 시 원본대조를 받은 후에 원본을 반환받을 수 있음
- 지원자격 심사에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자에게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가. 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영주교포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1부.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1부. ⑤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1부. ⑥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⑦ 재외국민 등록필증(보호자, 학생)	
해외파견근무 재외국민 및 기타재외국민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1부 ②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④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또는 호(제)적 등본 1부 ⑥ 출입국사실증명서(보호자, 학생) 1부 ⑦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보호자, 학생) 1부 ⑧ 제3국 수학인정서 (해당자) 1부 ⑨ 외국정부 발급 사업자등록증 (기타 재외국민 중 해당자에 한함)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학생 본인만 외국인)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1부 ②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④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학생: 한국국적과 취득한 외국국적의 출입국사실증명서) ⑤ 국적상실 확인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말소 등본 또는 호(제)적 등본) 1부 ⑥ 외국국적증명서(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1부 ⑦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1부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1부 ②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초·중등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④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1부 ⑤ 한국어 능력 증명서 1부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1부 ②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④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1부 ⑤ 전가족 호적등본 1부 ⑥ 외국국적 증명서(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1부 ⑦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1부 ⑧ 재정보증서류 -재정보증인의 미화 \$10,000 이상 중국은행 등 은행 예금잔고 증명서 (1월 이상 예치) 또는 미화 \$10,000 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⑨ 한국어 능력 증명서 1부	
북한이탈주민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 1부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통일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③ 학력증명서 1부(교육감이 학력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	

※ 외국학교 등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나.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안내

- 1) 아포스티유 협약: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 2) 아포스티유 확인대상 문서 : 외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 외국 정부기관 발행 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등
  - 공증문서 :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진단서, 회사 및 은행 발행 문서 등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한함(협약 미가입국은 공증문서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3) 발급방법 : 외국학교 등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
- 4) 관련기관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상담전화 02-2100-7500, 영사콜센터 02-3210-0404
- 5)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협약 미가입국은 공증문서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 대양주 (16)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유 럽 (51)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북 미 (1)	미국
중남미 (24)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아프리카 (10)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3)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 8 전형료

- 전 계열 : 전형료 없음

## 9 유의사항

- 지원자의 국내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이중국적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다만 지원당시 이중국적자라도 입학 학기 개시 전 하나의 국적을 포기한다는 조건부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학기 초 호적등본을 다시 제출 받아, 학기 개시 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자는 입학할 수 없습니다).
- 본교에서는 신체검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이 미비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원자는 유의하기 바랍니다.
- 학부 단위의 모집단위에 입학한 학생은 2학년 진입 시에 학과 또는 전공을 선택하게 되며, 전공별 인원은 교육여건과 전공별 특성에 따라 대학별 또는 모집단위에서 정한 절차에 준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본교 입학과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통지하지 않음이 원칙이며, 공고 미확인 및 입학원서의 연락처 오기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입학 후 제반사항은 본교 학칙 및 제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033-640-2739~41, FAX 033-640-2079)

## 10 안내부서 및 전화번호

안내 및 문의	안내부서	전화번호	비 고
대표 및 안내	교환실	033-642-7001(대표) 033-640-2114(안내)	
입학전형 안내	입학과	033-640-2739~41	
등록금 안내	사무국 재무과	033-640-2061,62	
장학금 안내	학생처 장학실	033-640-1595	
학생생활관(기숙사) 안내	학생생활관	강릉캠퍼스	033-640-2645
		원주캠퍼스	033-760-8101,03





# 강릉원주대학교 재외국민과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원서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인

수험번호		※									
지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사진 (3cm × 4cm)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남·여			
	국내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지원대학 및 학과(부)	대학명			학과(부)						
원	기간	학력사항				국내학교과정에 해당하는 과정	학교소재지 국가명	도시명	정규학교 여부		
	~	학교 학년졸업(예정)									
	~	학교 학년졸업(예정)									
	~	학교 학년졸업(예정)									
	~	학교 학년졸업(예정)									
	~	학교 학년졸업(예정)									
보 호 자	성명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부										
	모										
재 정 보 증 인	성명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출입국사실증명서상의 출입국 사실		출입국가		시 기		기 간			비 고		
				~		년 개월 일					
				~		년 개월 일					
				~		년 개월 일					
·학생생활관신청여부			• 신청 ( ) ※ 주소지가 강릉시 거주자는 강릉캠퍼스에, 원주시 거주자는 원주캠퍼스에 신청 불가								
귀 대학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별첨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학 입학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재정보증인 성명 (인)											
접수자	확인자										
강릉원주대학교총장 귀하											





